

- 구민이 참여하는 열린행정소통의 도시 • 사람이 중심에 서있는 교육복지도시 • 글로벌시대를 선도하는 창조도시
-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자족도시 • 삶의 품격을 높이는 문화·예술도시 • 자연친화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건강도시



연수구보

■ 구정 방향 ■
함께 가꿔요!
행복한 연수!

발행·편집인:연수구청장 / 발행처:인천광역시 연수구 / 주소: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호 (우)406-120 ☎ 810-7072 / FAX 810-7139

구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부록 제610호 2011. 1. 13.(목)

【 조 례 】

-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 제686호(인천광역시연수구회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 ... 1
-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 제687호(인천광역시연수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6
-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 제688호(인천광역시연수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11
-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 제689호(인천광역시연수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16

【 공 고 】

- 인천광역시연수구공고 제2011-37호(신조 공인 공고) 22
- 인천광역시연수구공고 제2011-38호(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 수 공표) ... 24
- 인천광역시연수구공고 제2011-39호(인천광역시연수구 고령화사회위원회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25

회							
람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p>인천광역시연수구 회계공무원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p>	<p><input type="checkbox"/> 개정 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재정법(2007.05.11), 지방재정법 시행령(2007.4.05)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변경하고 이와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제명 및 본문 내용 중 비표준화 조문을 한글어문규정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함 <p><input type="checkbox"/> 주요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법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재정법 제116조를 제9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로 변경 (제1조) - 지방재정법 제115조를 제9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로 개정 (제7조) ○ 재정보증 한도액을 11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변경 (제4조) ○ 제명 띄어쓰기 및 표준화된 우리말 등 한글어문규정에 맞도록 정비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연수구회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2011.1.13.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 제 686 호

인천광역시연수구회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연수구회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연수구회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를 “인천광역시연수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에 관한 조례” 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를 “「지방재정법」 제95조에 따라” 로 한다.

제2조 중 “각호의 1에” 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로 같은 조 제2호 중 “계기된 자” 를 “열거된 자” 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의한” 을 “따른” 으로 한다.

제4조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을 “제2조에 따른” 으로 “110만원” 을 “1천만원” 으로 한다.

제5조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을 “제2조에 따른” 으로, “이로서” 를 “이로써” 로 한다.

제6조 중 “당해 년도” 를 “해당 연도” 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 을 “「지방재정법」 제 94조에 따른” 으로, “기타” 를 “그 밖에” 로, “발생된 때에는” 을 “발생 되면” 으로, “지체없이” 를 “지체 없이” 로, “통지하고” 를 “알리고” 로, “당해” 를 “해당” 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 를 “해당” 으로, 같은 조 제3항 중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을 “제2항에 따른” 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 단체장” 를 “해당 구청장” 으로, “보관 관리” 를 “보관·관리” 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인천광역시연수구 회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방재정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u>각호의 1</u>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p> <p>1.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p> <p>2. 제1호에 <u>게기된 자</u>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구청장, 사업소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p> <p>제3조(재정보증) ① ~ ②(생략)</p> <p>③ 제2항에 <u>의한</u> 재정보증은 구청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 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p> <p>④ (생략)</p> <p>제4조(재정보증한도액) 제2조의 <u>규정에 의한</u>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u>110만원 이상으로 한다.</u></p> <p>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u>규정에 의한</u>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p>	<p><u>인천광역시연수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 「<u>지방재정법</u>」 제95조에 따라 ----- .</p> <p>제2조(회계관계공무원) ----- -----<u>각호의 어느 하나에</u> ----- .</p> <p>1. ----- -----</p> <p>2. ----- <u>열거된 자</u> ----- -----</p> <p>제3조(재정보증) ① ~ ②(현행과 같음)</p> <p>③ ----- <u>따른</u> ----- ----- ----- .</p> <p>④ (현행과 같음)</p> <p>제4조(재정보증한도액) 제2조에 <u>따른</u> ----- ----- <u>1천만원</u> ----- .</p> <p>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에 <u>따른</u> ----- -----</p>

<p>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u>이로서</u> 겸직한 회계직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p>	<p>----- <u>이로써</u> ----- ----- -----.</p>
<p>제6조(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u>당해</u> <u>년도</u>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p>	<p>제6조(보험료의 지급) ----- ----- <u>해</u> <u>당</u> <u>년도</u> ----- -----.</p>
<p>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u>지방재정법</u> 제115조의 <u>규정에 의한</u>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u>기타</u>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u>발생된 때</u>에 <u>는</u> <u>지체없이</u>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u>통지</u>하고 <u>당해</u>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u>당해</u>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p> <p>③ 구청장은 제2항에 <u>규정에 의한</u>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p>	<p>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 ----- 「<u>지방재정법</u>」 제94조 <u>에 따른</u> ----- <u>그 밖에</u> ----- <u>발생되면</u> <u>지체</u> <u>없이</u> -----<u>알리</u> <u>고</u> <u>해당</u>----- -----.</p> <p>② ----- ----- ----- <u>해당</u> ----- -----.</p> <p>③ ----- <u>제2항에 따른</u> ----- ----- -----.</p>
<p>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구청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보험료 보험기간, <u>기타</u>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p> <p>② 보증보험증권은 <u>당해</u> <u>단체장</u>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u>보관</u> <u>관리</u>한다.</p>	<p>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 ----- ----- ----- <u>그 밖에</u> ----- -----.</p> <p>② ----- <u>해당</u> <u>구청장</u> ----- ----- <u>보관·관리</u>----- -----.</p>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p>인천광역시연수구 저소득층 국민건강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p>	<p><input type="checkbox"/> 제정 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초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기초 생활보장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저소득 노인, 장애인 가구 등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조례 제611호(2009.4.20)로 제정, 부칙에 2009년 8월1일부터 2010년12월31일까지 시행하는 것으로 된 한시적 조례로 제정, 공포되었으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본 조례를 통한 수혜 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함으로서 부칙을 개정, 시행하고자 함. <p><input type="checkbox"/> 주요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층의 정의(제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료의 매월 부과금액이 10,000원 미만인 세대 ○ 지원대상자 선정(제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세대 ○ 보험료 지급(제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의 보험료 총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 - 지원대상자의 보험료 체납액은 지급하지 아니함 - 최근 1년간 6회 이상 체납된 세대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아니함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연수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2011. 1. 13.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 제 687 호

인천광역시연수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저소득 노인·장애인 가구 등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소득 계층이라 함은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보험료의 매월 부과금액이 10,000원 미만인 세대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지원시기) ① 보험료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연수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연수구 지역 가입자로서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세대로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년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단, 다른 법령 또는 후원사업에 의해 의료급여 수급 및 보험료를 지원 받고 있는 세대는 제외한다.

1. 만 65세이상 노인 세대

2. 모자·부자가정 및 소년·소녀가장 세대
3.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
4. 국가유공자 세대
5. 만성질환자 또는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있는 세대

② 이 조례에 의한 지원 시기는 연중으로 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보험료 납부마감일 전에 지원한다.

제4조(대상자선정 및 조사실시) ① 대상자선정은 매월 제3조의 지원대상 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세대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험료 지원대상자의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 받은 기본자료를 바탕으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조사 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제5조(보험료 지급)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확정된 대상자의 보험료 총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② 지원대상자의 보험료 체납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최근 1년간 6회 이상 체납된 세대에 대하여는 보험료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6조(대상자관리) 구청장은 제5조에 의한 각 선정대상자별 지급내역을 “별지 서식”에 의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중단) 제4조에 의한 대상자 중 수용자, 군입대자 등 충분한 중지 사유가 있는 경우 지원을 중단한다.

제8조(정산) 제7조에 의한 지원 중단 대상자 중 기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익월 보험료에서 차감 지급한다.

제9조(지원예산 확보) 지원예산은 매년 일반회계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p>인천광역시연수구 자활기관협의체 구 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p>	<p><input type="checkbox"/> 제정 이유</p> <p>○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규정에 의거 자활사업에 관련된 직업안정기관·사회복지시설(기관), 자활사업실시기관 등 각 대표로 자활기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연수구 자활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p> <p><input type="checkbox"/> 주요 내용</p> <p>○ 협의체의 기능 및 구성(제2조 및 제3조)</p> <p>○ 위원의 임기 및 직무(제4조 및 제6조)</p> <p>○ 회의(제7조 및 제9조)</p>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연수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2011. 1. 13.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 제 688 호

인천광역시연수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30조의2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자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 자활기관협의체(이하 “협의체” 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각 자활사업 관련기관의 해당연도 사업실시계획 및 사업별 수용가능 인원에 관한 사항
2. 지역특성을 반영한 자활사업의 실시방향 등 해당연도 지역자활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4. 자활근로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
5. 자체 운영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위원장이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협의체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주민생활지원국장, 사회복지과장, 지역경제과장, 지역자활센터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자활사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직업안정법」 제2조의2 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장
2. 상공회의소 및 소상공인지원센터의 대표자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그 밖에 자활사업을 행하는 기관의 대표자
4. 취·창업관련 자문이 가능한 기관(단체)의 대표자
5. 기타 구청장이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의체의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부터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등으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 자활사업 관련분야 대표자로 위촉된 위원이 그 직을 상실하였을 때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품위를 손상시킬 때
4.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될 때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협의체 대표자 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대표자회의 “이하 대표자 회의”라 한다)를 소집한다.

② 대표자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는 연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위원장이 대표자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 및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대표자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및 회의록) ① 협의체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자활기관협의체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자활기관협의체업무 담당이 된다.

③ 간사 및 서기는 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기타 중요사항

제9조(협의체 실무자회의 등) ①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체 실무자회의(“이하 실무자회의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전년도 지역자활사업 추진실적 및 개선 필요사항의 점검
2. 지역자활사업 추진실적 및 개선 필요사항의 점검
3. 조건부수급자의 사업별 걱정 대상자의 선정

4. 자활대상자의 사전·사후관리 방안
 5. 지역자활지원계획 내용의 검토 및 이행사항의 점검
 6. 자활사업 추진경과 및 문제점 점검
 7. 그밖에 협의체 구성기관이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실무자회의는 분기 1회 이상 수시로 개최한다.
- ③ 실무자회의의 참석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보장기관 자활업무 관련 담당자
 2. 동 주민센터 자활사업 담당공무원
 3. 직업안정기관 실무자
 4. 기타 자활사업실시기관 등의 실무자

제10조(수당 등) 대표자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연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p>인천광역시연수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p>	<p><input type="checkbox"/> 제정 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동안 노동부 관장사업인 사회적기업 제도를 지자체에서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로 확대 ○ 인천시에서 2011년부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사회적기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체계 구축 <p><input type="checkbox"/> 주요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제정 목적 및 정의 (제1조 및 제2조) ○ 사회적기업육성지원위원회의 설치·운영 (제3조 내지 제9조) ○ 사회적기업 육성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10조) ○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등 (제11조) ○ 사회적기업 등의 지원 (제12조 내지 제14조) ○ 기 타 (제15조 내지 제1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구매 촉진, 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홍보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연수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2011. 1. 13.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 제 689 호

인천광역시연수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기업을 말한다.
2.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제1호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 않았으나,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육성하기 위하여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3.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5.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제2장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제3조(위원회 설치)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 등”이라 한다)의 설립 및 육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 하에 인천광역시연수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지원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 의원, 연수구 소속 공무원,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기업인, 기업운영과 관련한 전문직종 종사자, 사회적기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되, 경제업무와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기업 육성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9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제10조(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제1항의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추진방향
2. 사회적기업 등 창출목표량 및 고용창출 목표량
3.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및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기업 등의 재원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6.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사회적기업으로 발전 가능한 조직 중에서 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요건을 완화한 기준을 따로 정하여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지원·

육성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경영지원 등) ①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 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시설비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용자하거나 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불용물품 등을 사회적기업 등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

제14조(재정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자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정지원 절차 및 구비서류, 사업실적 보고, 지원의 취소 및 환수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기업 등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고사항의 검토와 지도감독의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우선구매 촉진)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생산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구청장은 지역 내 민간기업·단체 등이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민간기업·단체 간 교류·협력 네트워크의 구축·운영 지원
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

제17조(홍보 등) 구청장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1. 지역 내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 내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
3. 전문가 포럼,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고 제2011 - 37호

신조 공인 공고

인천광역시연수구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신조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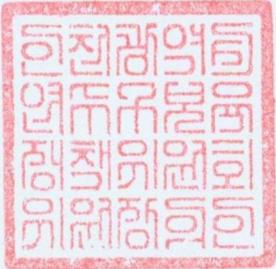
2011. 01. 12.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다 음

1. 신조 인영 : 붙임
2. 사용 개시일 : 2011. 01. 27.
3. 신 조 사 유 :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신조공인

구분	공 인 명	규 격	인 영	비 고
신 조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육정책위원회위원장의인	3.6cm×3.6cm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 수 공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 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1년 1월 12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구청장]

단위:명

동별	청구권자 총수			서명인수	최 소 서명인수	비고
	계	19세이상주민	등록외국인			
계	210,422	210,320	102	31,563		
옥련1동	17,558	17,550	8		2,104	
옥련2동	18,674	18,655	19		2,104	
선 학 동	17,751	17,746	5		2,104	
연수1동	21,871	21,859	12		2,104	
연수2동	19,490	19,486	4		2,104	
연수3동	16,537	16,531	6		2,104	
청 학 동	24,893	24,883	10		2,104	
동춘1동	13,849	13,844	5		2,104	
동춘2동	16,439	16,431	8		2,104	
동춘3동	15,131	15,127	4		2,104	
송 도 동	28,229	28,208	21		2,104	

※ 산정된 서명인 수 31,563명 이상의 서명을 받되, 4개 동 이상에서 각각 최소 서명인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함

※ 외국인 : 19세이상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자 중 같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

[구의원]

단위:명

선거구별	동별	청구권자 총수			서명인수	최 소 서명인수
		계	19세이상주민	등록외국인		
제 가선거구	계	64,461	64,413	48	12,892	
	옥련1동	17,558	17,550	8		645
	옥련2동	18,674	18,655	19		645
	송 도 동	28,229	28,208	21		645
제 나선거구	계	45,419	45,402	17	9,084	
	동춘1동	13,849	13,844	5		454
	동춘2동	16,439	16,431	8		454
	동춘3동	15,131	15,127	4		454
제 다선거구	계	53,778	53,763	15	10,756	
	선 학 동	17,751	17,746	5		538
	연수2동	19,490	19,486	4		538
	연수3동	16,537	16,531	6		538
제 라선거구	계	46,764	46,742	22	9,353	
	연수1동	21,871	21,859	12		468
	청 학 동	24,893	24,883	10		468

※ 당해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선거구별로 산정된 서명인 수 이상의 서명을 받되, 당해 선거구안의 동 전체의 수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3분의 1이상의 동에서 각각 최소 서명인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며, 당해 선거구안의 동 전체의 수가 2개인 경우에는 각각 최소 서명인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 고령화사회위원회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연수구 고령화사회위원회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1년 01월 12일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1. 제정이유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령화 사회위원회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고령화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개발 및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3조에 따라 고령화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령사회위원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안 제1조)
- 나. 고령화사회위원회는 고령화정책에 대한 개발·계획수립 및 중요한 고령화 정책에 대한 심의·의결과 구청장의 자문 기능을 규정 함(안 제2조)

- 다.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당연직 위원과 고령화 사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3조)
- 라. 위원회는 매년 시행할 고령화사회정책과 시행계획을 전년도 9월말까지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정책개발에 관한사항을 규정 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1년 2월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032-749-6911, www.yeonsu.go.kr/) (참조 : 가정복지과장)] 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법인명, 대표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4. 참고자료

인천광역시연수구 고령화사회위원회 운영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고령화사회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2011 -
----------	--------

제출연월일 : 2011. 01. .

제출인 :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 제안이유

-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령화 사회위원회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 및 노동생산성 저하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 노인의료비·연금 등 공적부담증가, 세입기반 악화로 인한 재정수지 악화, 노인부양 부담증가에 따른 세대 간 갈등 등 다양한 고령화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자 제안함.

□□ 주요내용

○ 제1조 목적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3조에 따라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령화사회위원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제2조 기능

고령화사회위원회는 고령화정책에 대한 개발·계획수립 및 중요한 고령화 정책에 대한 심의·의결과 구청장의 자문에 응함.

○ 제3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당연직 위원과 고령화 사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위원으로 구성.

○ 제7조 간사

원활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를 위하여 1인의 상근하는 유급 간사를 둘 수 있다.

○ 제8조 정책개발

위원회는 매년 시행할 고령화사회정책과 시행계획을 전년도 9월말까지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참고사항

- 입법예고 : 초일불산입하여 20일 이상
- 예산조치 : 해당 없음

인천광역시연수구 고령화사회위원회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3조에 따라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 라 한다)의 고령화사회위원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고령화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고령화정책에 대한 개발·계획수립 및 중요한 고령화 정책에 대한 심의·의결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 및 노동생산성 저하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에 관한 사항
2. 노인의료비·연금 등 공적부담 증가에 관한 사항
3. 세입기반 악화로 인한 재정수지 악화에 관한 사항
4. 노인부양부담 증가에 따른 세대 간 갈등에 관한 사항
5. 노인복지시설이나 휴식 공간 부족에 관한 사항
6. 가정에서의 노인의 역할과 위치 축소에 관한 사항
7. 고용과 소득보장에 관한 사항
8. 고령친화적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각종 고령사회 극복에 필요한 연도별 정책 개발과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부구청장·주민생활지원국장·보건소장·가정복지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고령화사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2. 구의회의원
3. 노인복지관련 전문가
4. 노인복지관련 업무 종사자
5. 노인단체 관계자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각각 호선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의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의원과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 위원은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만 위촉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해촉된 위원이 총위원의 1/3이상인 경우에는 수시 모집을 통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부터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당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등으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 관련단체나 관련업무 종사자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 하였을 때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품위를 손상시킬 때
4.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될 때

제7조(간사) ① 원활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인의 상근하는 유급 간사를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소집 및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정책개발) 위원회는 매년 시행할 고령화사회정책과 시행계획을 전년도 9월말까지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구청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이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성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회의내용(정책개발 및 계획수립에 관한 내용 등)
4. 회의결과

제11조(회의수당)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연수구 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운영지원) 구청장은 위원회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예산과 별도의 사무 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